

#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

공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 전반과 주요사업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하고 측정하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.

## I. 인권영향평가 개요

### 1. 추진배경

- 유엔 [기업과 인권 이행지침]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·점검의무(Due Diligence)<sup>1)</sup>의 영향을 규명,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
- 인권경영 현황 점검 및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잠재적 인권리스크 사전방지와 인권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

### 2. 추진목적

- 공사의 인권경영 기반 마련과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 수행
- 실제적·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여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### 3. 추진근거

-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(2018.08.31.)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」
-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5장 인권영향평가(제26조 ~ 제28조)
- 2022년 인권경영 추진 계획(청렴감사부-573호, 2022.05.04.)
-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(청렴감사부-1027호, 2022.08.04.)

1)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유엔 “보호, 존중, 구제”프레임워크의 실행, 일반원칙 18

## II.

# 2022년 평가개요 및 지표의 구성

### 1. 2022년 인권영향평가 개요

- 평가기간: 2022. 10. 17.(월) ~ 10. 21.(금)
- 평가범위: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부문 (시민복지실 장례문화부 5개 분야)
- 평가주체: 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(7명)
- 평가방법
  - 자체평가: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실시(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7명)
  - 최종평가: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평가 및 의결
- 평가체계: 분야별 백분위 환산 산출, 종합점수는 분야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
- 평가보고: 평가의견 수렴 및 인권경영위원회 보고
- 평가위원: 공사 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(총 7명)
  - 내부위원 3명: 주○○(본부장), 강○○(경영관리실장), 허○○(노조조합위원장)
  - 외부위원 4명: 김○○(前하남시자치행정국장), 윤○○(하남시여성단체협의회 이○○(고문노무사), 장○○(고문변호사)
- 평가내용: 공사 인권영향평가(기관운영, 주요사업)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및 인권리스크에 대한 개선안 제시

### 2.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구성 및 체크리스트 개선

- ☞ 기관운영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‘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’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공사에 맞게 조정하여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12개 분야 개발하여 활용
- ☞ 주요사업 지표는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시민복지실 장례문화부(마루공원)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개발하여 활용

평가 대상	평가지표	평가내용
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	183개	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12개 분야
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	26개	공정운영 등 5개 분야(장례문화부)

○ 분야별 평가구성[기관운영(12개 분야 183개 지표), 주요사업(5개 분야 26개 지표)]

-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(12개 분야 183개 지표)

연번	평가 분야	평가지표	비고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33	
2	고용상의 비차별	15	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3	
4	강제 노동의 금지	8	
5	아동노동의 금지	4	
6	산업안전 보장	18	
7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10	
8	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10	
9	환경권 보장	16	
10	고객인권 보호	18	
11	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	11	
12	직원 인권 보호	27	
합 계		183	

-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5개 분야 26개 지표)

연번	평가 분야	평가지표	비고
1	공정 운영	6	
2	사회적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	4	
3	사업장 안전보장	7	
4	근무자 인권보호	5	
5	지역주민 환경보장	4	
합 계		26	

○ 평가 체크리스트 개선

-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 평가위원 권고사항 반영
  - ▶ 분야: 고용상의 비차별 등 7개 분야
  - ▶ 개선방법: 체크리스트 신설 및 수정에 의한 개선
  
- 인권영향평가 TF 담당자 의견에 따른 체크리스트 수정·보완
  - ▶ (기존) 13개 분야 214개 지표 → (개선) 12개 분야 183개 지표)
  - ▶ 중복 및 공사와 무관한 지표 삭제
  - ▶ 정부정책 등에 따른 코로나19 항목 및 지표 삭제(14개 지표)
  - ▶ ESG경영을 반영한 18개 지표 신설

3.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

○ 평가기준

- 세부 지표별 점수 부여 기준

구분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없음	해당없음
점수	2점	1점	0점	평가제외	평가제외

- 평가점수 산출
  - 분야별 백점 점수로 환산
  - 종합점수는 분야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

$$100\text{점 단위 환산} = \sum (\text{해당항목 지표점수}) / (2 \times \text{해당항목 지표수}) \times 100$$

- 평가등급 체계: 평균달성률 기준 등급(1 ~ 9등급 부여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점수	100점 ~ 90점	90점 미만 ~ 80점	80점 미만 ~ 70점	70점 미만 ~ 60점	60점 미만 ~ 50점	50점 미만 ~ 40점	40점 미만 ~ 30점	30점 미만 ~ 20점	20점 미만 ~ 0점

#### 4.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기간

연번	구분	주요 내용	기간
1	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	○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구성 - 기관운영,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	8월 4주 (~8/24)
▼			
2	인권영향평가 TF팀 구성	○ 인권경영 TF팀 구성[청렴감사부-1103(2022.08.24.)] - 평가지표별 담당자 확정 교육 참석 공문 송부 - 체크리스트 내용(적절성 등)에 대한 TF 담당자 의견 수렴	8월 4주 (~08/31)
▼			
3	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	○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(청렴감사부-1184) - TF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정(12개 분야, 183개 지표)	9월 1주 (9/7)
▼			
4	‘인권영향평가’ 증빙자료 제출	○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- 체크리스트 평가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제출 (해당부서 ☞ 청렴감사부)	9월 1주~4주 (9/7~9/30)
▼			
5	증빙자료 취합 및 평가자료 작성	○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- 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	10월 1주 (10/1~10/14)
▼			
6	‘인권영향평가’ 내부위원 및 외부전문가 평가	○ 인권영향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위원의 평가 - 평가 방법 : 서면평가 및 제출	10월 3주 (10/17~10/21)

## □ 2022년 인권영향평가 분석결과

## 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총점 98.3점(1등급)

☞ 2022년 기관운영 평가 결과 98.3점(1등급)으로 전년(92점) 대비 **6.3점 상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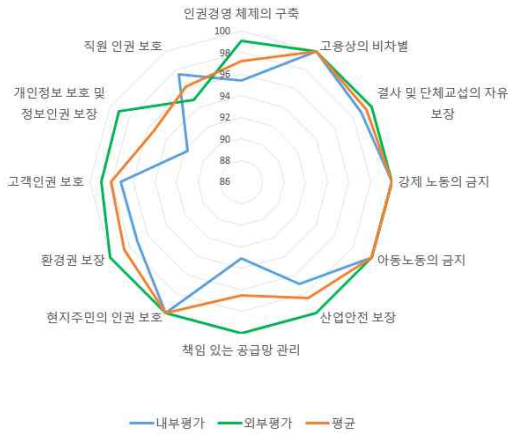
- ▶ 공사의 기관운영 인권 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
- ▶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권고되어 있는 진단 항목과 분야를 바탕으로 공사 특성에 맞게 고도화 하였고 특히, ESG 경영에 따른 관련 지표를 신설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평가하였음
- ▶ 공사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새로이 마련하거나, 산업재해 관련 안전전문업체 및 보건전문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인권경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이 엿보임
- ▶ 또한, 인권영향평가 시 평가지표별 근거 및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
- ▶ 기관운영 평가의 경우, 평균 종합점수는 98.3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 등급을 달성함. 다만, 12개 분야 중 「인권경영 체제의 구축」, 「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」, 「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」, 「직원 인권보호」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, 직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점에 대한 이행상황 또한 점검을 실시해야 함

## 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총점 99.3점(1등급)

- ▶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‘마루공원’을 대상으로 5개 분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
- ▶ 주요사업 5개 분야 대부분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「공정운영」, 「근무자 인권보호」의 항목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
- ▶ 주요사업부서 평가의 경우, 평균 종합점수는 99.30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등급을 달성함

## □ 주요 지표별 권고의견

○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☞ 내부 97.3점 / 외부 99.3점 / **총점 98.3점**



연번	평가분야	내부	외부	평균	등급
<b>총 점</b>		<b>97.3</b>	<b>99.3</b>	<b>98.3</b>	<b>1</b>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95.4	99.1	97.2	1
2	고용상의 비차별	100	100	100	1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98.9	100	99.4	1
4	강제 노동의 금지	100	100	100	1
5	아동노동의 금지	100	100	100	1
6	산업안전 보장	96.9	100	98.4	1
7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93.1	100	96.5	1
8	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100	100	100	1
9	환경권 보장	97.1	100	98.5	1
10	고객인권 보호	97.2	99	98.1	1
11	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	91.7	99.1	95.4	1
12	직원 인권 보호	97.5	94.8	96.2	1

기관운영 평가의 경우, 평균 종합점수는 98.3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등급을 달성함. 다만, 12개 분야 중 「인권경영 체제의 구축」, 「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」, 「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」 및 「직원인권보호」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·보완을 권고

## ○ 주요 지표별 권고의견

### ▶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

☞ 공사는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.

- (의견) 인권경영규정에 근거규정 마련 외에 구체적으로 협력회사의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실행 관련 자료가 미비
- (개선안) 협력회사의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그 증빙자료를 갖추는 게 필요

### ▶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

☞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

- (의견)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 사전 협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닌 결과에 대한 통지에 국한됨
- (개선안) 공사 조직의 개편과 채용 등의 사항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어 협의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

▶ **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**

- ☞ 화장실 등의 공공시설은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시설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한다.
- (의견) 주차빌딩 몰래카메라 점검과 관련하여 2022년도 점검 기록이 부재
- (개선안) 주차빌딩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,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이 필요함

▶ **직원 인권 보호**

- ☞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.
- (의견)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형태 필요
- (개선안) 사이버교육보다 교육 효과 및 몰입도가 높은 집체교육 위주로 교육함이 바람직함

- ☞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담당조직 운영,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.
- (의견) 성희롱·성폭력 분야에는 고충상담원이 지정되었으나 괴롭힘 관련 담당조직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임
- (개선안)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관련 고충 담당조직을 기존 성폭력 분야 고충상담원과 별도로 설치하거나, 기존 고충상담원의 역할 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운영 및 홍보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

- ☞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언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.
- (의견)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 신설 추진 외에, 공사 차원의 장치가 부재함
- (개선안) 단체협약 외에 공사 차원에서 부당한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☞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실태파악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한다.
- (의견) 보완 필요
- (개선안) 청렴도 실태조사의 한 항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파악하지 말고, 별도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,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



☞ 공사는 양질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퇴근 후나 공휴일에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SNS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.

- (의견) 실질적 증빙자료 부재
- (개선안) 일과 시간 이후에 메신저, SNS, 문자메시지,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, 업무 유관 지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

☞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담당 조직 운영,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.

- (의견)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하여 예방지침을 마련 홍보하고 고충상담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, 사례 전파를 통한 예방활동은 미흡함
- (개선안) 공사에서는 2022년,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으나, 그 이후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례에 대한 전파가 없었으므로 향후에는 재방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발생 사례의 직원 공유 및 전파가 반드시 필요함

○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: 내부 100점 / 외부 98.6점 / 총점 99.3점



연번	평가분야	내부	외부	평균	등급
총 점		100	98.6	99.3	1
1	공정 운영	100	95.8	97.9	1
2	사회적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	100	100	100	1
3	사업장 안전보장	100	100	100	1
4	근무자 인권보호	100	97.5	98.8	1
5	지역주민 환경보장	100	100	100	1

주요사업 평가의 경우, 평균 종합점수는 99.3점으로 평균달성률 기준 1등급을 달성함. 다만, 5개 분야 중 「공정 운영», 「근무자 인권보호」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·보완을 권고

## ○ 주요 지표별 권고의견

### ▶ 공정 운영

- ☞ 공사 장사시설 이용 관련하여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.
- (의견) 공사 장사시설 이용 시 근무 직원 민원응대가 미흡함
- (개선안) 공사 장사시설 이용 시 특히, 봉안당 시설 내 직원 민원응대 태도 등이 미흡함.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도 필요하지만 근무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필요 (필요 시 공사 전 직원 전문기관 의뢰 교육 실시)

### ▶ 근무자 인권보호

- ☞ 공사 장사시설 근무자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(의견) 제시한 증빙자료 외에 추가 자료 필요
- (개선안) 폭력예방교육 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근거자료 필요

## □ 인권영향평가 종합의견

### ○ 잘된 점

- ▶ 이전에 비해 2022년도에 ‘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’을 새로이 마련하거나, 산업재해 관련 안전전문업체 및 보건전문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인권경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음.
- ▶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면서 평가지표별로 근거 및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권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함.

### ○ 기타 미흡 및 개선사항

- ▶ 단순 교육 및 홍보보다는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.
- ▶ 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의 경영을 인권측면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게끔 견인하는 최고 조직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봄.

## □ 지표별 상세 분석결과

###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○ 분야 1.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☞ 내부 95.4점 / 외부 99.1점 / 평균 97.2점

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균	등급
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합 계(지표점수의 평균)	95.4	99.1	97.2	1
	인권존중 정책선언	91.7	97.9	94.8	1
	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	90.0	97.5	93.8	1
	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	97.2	100.0	98.6	1
	인권경영 성과	100.0	100.0	100.0	1
	구제절차 마련	98.1	100.0	99.1	1

☞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평가결과: 97.2점

- ▶ 전년 대비 6.2점이 상승하였고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보임. 특히, 인권경영 성과 부문에서는 전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음
- ▶ 공사는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규정에 명시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 필요

○ 분야 2. 고용상의 비차별 ☞ 내부 100.0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100.0점

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균	등급
고용상의 비차별	합 계(지표점수의 평균)	100.0	100.0	100.0	1
	고용상 비차별	100.0	100.0	100.0	1
	고용상 남녀비차별	100.0	100.0	100.0	1
	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	100.0	100.0	100.0	1

☞ 고용상의 비차별 평가결과: 100.0점

- ▶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유지함

○ 분야 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☞ 내부 98.9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99.4점

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균	등급
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합 계(지표점수의 평균)	98.9	100.0	99.4	1
	결사·단체교섭의 자유	100.0	100.0	100.0	1
	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	100.0	100.0	100.0	1
	결사 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	96.7	100.0	98.3	1

☞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평가결과: 99.4점

- ▶ 전년 대비 0.6점 하락하였고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사전 협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

○ 분야 4. 강제노동의 금지 ☞ 내부 100.0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100.0점

강제노동의 금지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합 계(지표점수의 평균)	100.0	100.0	100.0	1
	강제노동의 금지	100.0	100.0	100.0	1

☞ 강제노동의 금지 평가결과: 100.0점

- ▶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에서는 전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유지함

○ 분야 5. 아동노동의 금지 ☞ 내부 100.0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100.0점

아동노동의 금지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합 계(지표점수의 평균)	100.0	100.0	100.0	1
	연소자 고용 금지	100.0	100.0	100.0	1

☞ 아동노동의 금지 평가결과: 100.0점

- ▶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에서는 전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유지함

○ 분야 6. 산업 안전 보장 ☞ 내부 96.9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98.4점

산업 안전 보장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합 계(지표점수의 평균)	96.9	100.0	98.4	1
	안전관리체계 구축	97.2	100.0	100.0	1
	응급상황 및 화재예방	100.0	100.0	100.0	1
	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	95.8	100.0	100.0	1
	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	94.4	100.0	100.0	1

☞ 산업 안전 보장 평가결과: 98.4점

- ▶ 전년 대비 11.4점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점을 보임
- ▶ 다만,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의 보완이 필요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 필요

○ 분야 7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☞ 내부 93.1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96.5점

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<b>합 계</b> (지표점수의 평균)	<b>93.1</b>	<b>100.0</b>	<b>96.5</b>	<b>1</b>
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	100.0	100.0	100.0	1	
모니터링 실시	83.3	100.0	91.7	1	
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	95.8	100.0	97.9	1	

☞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평가결과: **96.5점**

- ▶ 전년도 평가 시 65점으로 매우 취약한 분야였으나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전년 대비 31.5점 상승으로 개선의 노력이 엿보임
- ▶ 보안담당 직원은 별도의 인권교육을 수료하였고, 보안사무 외주 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전년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함

○ 분야 8.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☞ 내부 100.0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100.0점

현지주민의 인권보호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<b>합 계</b> (지표점수의 평균)	<b>100.0</b>	<b>100.0</b>	<b>100.0</b>	<b>1</b>
지역주민 인권의 존중·보호	100.0	100.0	100.0	1	
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	100.0	100.0	100.0	1	

☞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평가결과: **100.0점**

- ▶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유지함

○ 분야 9. 환경권 보장 ☞ 내부 97.1점 / 외부 100.0점 / 평균 98.5점

환경권 보장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<b>합 계</b> (지표점수의 평균)	<b>97.1</b>	<b>100.0</b>	<b>98.5</b>	<b>1</b>
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	96.7	100.0	98.3	1	
환경정보의 공개	100.0	100.0	100.0	1	
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접근의 원칙	100.0	100.0	100.0	1	
친환경 활동	91.7	100.0	95.8	1	

☞ 환경권 보장 평가결과: **98.5점**

- ▶ 전년 대비 1.5점 상승하였으나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함
- ▶ 또한, 친환경 활동 부문에서 친환경 제품 구입 규정 및 지침을 보완하고 제품 구입이나 시설투자 시 친환경적인 요소를 좀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

○ 분야 10. 고객인권 보호 ☞ 내부 97.2점 / 외부 99.0점 / 평균 98.1점

고객인권 보호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<b>합 계</b> (지표점수의 평균)		<b>97.2</b>	<b>99.0</b>	<b>98.1</b>
	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	100.0	100.0	100.0	1
	서비스·정보 등 이상 시 조치	100.0	100.0	100.0	1
	서비스 정보제공	88.9	95.8	92.4	1
	고객 사생활 보호	100.0	100.0	100.0	1

☞ 고객인권 보호 평가결과: **98.1점**

- ▶ 전년 대비 1.9점 하락하였으며 서비스 정보제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임
- ▶ 공사는 체육시설, 장례시설, 주차시설과 관련,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방법과 내용을 갖추고 현행화 된 안내책자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

○ 분야 11.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☞ 내부 91.7점 / 외부 99.1점 / 평균 95.4점

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<b>합 계</b> (지표점수의 평균)		<b>91.7</b>	<b>99.1</b>	<b>95.4</b>
	개인정보 보호	100.0	98.2	99.1	1
	정보인권 보장	83.3	100.0	91.7	1

☞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평가결과: **95.4점**

- ▶ 전년 대비 0.6점 하락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정보인권 보장 부문은 부족한 면을 보임
- ▶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

○ 분야 12. 직원인권 보호 ☞ 내부 97.5점 / 외부 94.8점 / 평균 96.2점

직원인권 보호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	<b>합 계</b> (지표점수의 평균)		<b>97.5</b>	<b>94.8</b>	<b>96.2</b>
	갑질·폭력예방 및 괴롭힘 금지	97.2	95.8	96.5	1
	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	100.0	100.0	100.0	1
	일·가정 양립	92.9	100.0	96.4	1
	휴식권	100.0	83.3	91.7	1

☞ 직원인권 보호 평가결과: **96.2점**

- ▶ 전년 대비 5.2점 상승하였으며 ‘갑질·폭력예방 및 괴롭힘 금지’ 부문은 전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도를 보임
- ▶ 다만, 일·가정 양립 부문에서는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외 정기적으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임직원 만족도 점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##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○ 분야. 시민복지실 장례문화부 ☞ 내부 100.0점 / 외부 98.6점 / 평균 99.3점

	지표내용	내부평가	외부평가	평 균	등급
시민복지실 장례문화부	합 계(지표점수의 평균)	100.0	98.6	99.3	1
	공정운영	100.0	95.8	97.9	1
	사회적 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	100.0	100.0	100.0	1
	사업장 안전보장	100.0	100.0	100.0	1
	근무자 인권보호	100.0	97.5	98.8	1
	지역주민 환경보장	100.0	100.0	100.0	1

☞ 시민복지실 장례문화부 평가결과: **99.3점**

- ▶ 전년 대비 0.7점 하락하였으며 ‘공정운영’ 과 ‘근무자 인권보호’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
- ▶ 공정운영 부문에서는,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 및 불편사항 접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고객 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요 고객접점인만큼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
- ▶ 근무자 인권보호 부문에서는, 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교육 실시와 함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함

끝.